#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안 번호 | 433 |
|---|---|

제출연월일 : 2009. 1. 1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신설하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

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라. 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8. 11. 21. ~ 2008. 12. 1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영”을 각각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민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시민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전거도로 설계 및 시공시 자전거도로의 연계·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중 “법”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법인·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시설물 설치 등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관련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자전거관련 용품,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전거 이용자보험) ①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충남지방경찰청”을 “대전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1월과 7월”을 “3월과 9월”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생략)<br>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br>1. ----------<br>---「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 ~ 3. (생략) | 2. ~ 3. (현행과 같음) |
| <신설> | 4. “시민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시민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 4. (생략) | 5. (현행과 같음) |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생략)<br>1. ~ 5. (생략) | 제3조(시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br>1. ~ 5. (현행과 같음) |
| <신설> | 6. 자전거도로 설계 및 시공시 자전거도로의 연계·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②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 8. (생략)<br>③ ~ ④ (생략) | ②----------「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br>1. ~ 8. (현행과 같음)<br>③ ~ ④ (현행과 같음) |
| 제7조(재정지원) ①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②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br>③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법인·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시설물 설치 등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②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br>③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관련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자전거관련 용품,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신설> | 제7조의2(자전거 이용자보험) ①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br>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br>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br>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9조(구성) ① ~ ② (생략)<br>③ (생략)<br>1. (생략)<br>2. 유관기관 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br>3. ~ 4. (생략)<br>④ (생략) | 제19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현행과 같음)<br>1. (현행과 같음)<br>2. ----------대전지방경찰청--<br>3. ~ 4. (현행과 같음)<br>④ (현행과 같음) |
|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br>② (생략) | 제22조(회의) ①----------3월과 9월----------<br>② (현행과 같음) |

# 관계 법령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7.19>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自轉車橫斷道)"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9.1.21, 2006.7.19>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1, 2001.1.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정비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8, 2008.2.29>

제11조 (자전거駐車場의 設置·운영) ①「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2006.7.1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서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제4조 (정비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등 주요 교통로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정비사업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정비사업효과의 분석

## □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말한다.

6.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1.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교차로"라 함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5.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6.5.30 건설교통부령 제32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은 자전거의 주행속도 및 자전거 통행장애 요소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3조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설계속도(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상황등에 따라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구 분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
| 자전거전용도로 | 30 |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20 |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20 |

제4조 (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1.1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장 100미터미만의 터널·교량등의 경우에는 0.9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갓길) 자전거도로(일반도로와 별도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에 한한다. 이하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같다)의 양측에 0.2미터이상의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과 접속되어 갓길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정지시거) ①자전거도로에는 당해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정지시거(미터) |
|---|---|
| 30이상 | 30이상 |
| 20이상 | 15이상 |
| 10이상 | 10이상 |

②제1항에서 "정지시거"라 함은 자전거도로의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당해자전거도로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0.15미터의 물체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제7조 (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곡선반경(미터) |
|---|---|
| 30이상 | 24 |
| 20이상 | 17 |
| 10이상 | 10 |

제8조 (곡선부의 편구배)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적설등을 참작하여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종단구배) ①자전거도로의 종단구배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단구배(퍼센트) | 제한길이(미터) |
|---|---|
| 7이상 | 90이하 |
| 6이상 | 120이하 |
| 5이상 | 160이하 |
| 4이상 | 220이하 |
| 3이상 | 제한없음 |

②종단구배가 계속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길이에 이를 때마다 3퍼센트미만의 종단구배를 가진 구간을 100미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축한계) 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의 건축한계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9.8.9>

제11조 (자전거안전표지등의 설치) 자전거횡단도등 안전표지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5.30>

제12조 (육교·지하도의 자전거경사로 설치) ①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단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경사로의 폭은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높이가 3미터이상일 경우에는 매 3미터마다 1.2미터이상의 평면구간을 두어야 한다.

제13조 (도로와의 평면교차) ①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평면교차할 경우에는 교차각은 45도이상으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10미터이상 구간은 시야의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차점으로부터 10미터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구배가 3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전 3미터이상의 지점에 자전거의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자전거도로의 양측 가장자리에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야광 백색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철도와의 평면교차) ①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할 경우에는 교차각은 45도이상으로 하고, 건널목 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10미터이내의 구간에는 직선으로 하며 그 구간내의 종단구배는 3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널목 양측으로부터 10미터 구간을 직선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종단구배 3퍼센트이상의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의 3미터이상의 지점에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장 및 배수) ①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전거도로의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1.5 내지 2.0퍼센트의 횡단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성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구조는 자동차의 중량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등을 설치할 것
3.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4.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제17조 (안전시설등) ①굽커브·낭떠러지등에는 자전거도로와 연접하여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자전거방호울타리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돌출시설물등 자전거통행에 대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붕괴·파랑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시설) 자전거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간이화장실·음료대·벤치·공중전화 및 자전거주차장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동차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에 자동차·손수레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05-11-11 조례 제 3362호
(일부개정) 2007-12-14 조례 제 3582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대전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교통건설국장·도시주택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12. 14 조례 제3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략
(36)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교통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을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37) ~ (43)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9년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 Ⅰ.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월 19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9년 1월 20일

**3. 상 정 일 자** :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9. 1. 10)상정, 심사, 원안가결

## Ⅱ.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 1.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신설하여 자전가 타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

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라. 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연정수)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과 자전거 이용에 따른 편의성을 높이고자 각종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임.

###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7조에서는 시민의 자전거타기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각종 캠페인 등 행사 개최 시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의2에서는 자전거 이용에 따른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자전거 대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시민이 자전거 타기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용편의 증진과 시설물 개선에 역점을 두어 시행함으로써 자전거를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자전거 이용자보험 가입 시, 가입대상자의 범위와 가입조건, 보험수혜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시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며, 각종 자전거 관련 행사시 지원되는 재정에 있어서도 재정지원에 따른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하여 지원하고,

○ 이와함께 시민자전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체계 정비와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